

보도	국장
방법	국장
과장	국장

기안용지
(전화: 731*6312)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공 28280-106/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8. 9. 23

보조
기
관
산업경제기획처
상공과
공정계
기안책임자 김용택(이종선)

합
조
기
관
법무담당관
심사필
보고봉제관

문
서
통
계
1988. 9. 23
인

경
유
수
신
참
조
각안참조

발
신
명
의
시
장

1988. 9. 23
시울특별시
1988. 9. 23

제
목
중소기업 육성 재정 자금 지원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 건

1. 상공 28280-141 (88.3.2) 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대호로 우리시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 및 동집행 요령에 의거 '88년도 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8개업체 841,400천원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신청업체수가 적어 16개업체 480,000천원만 지원되어,
3. 지원하고 남은 재원과 그동안 조성된 재원 (대출금 회수액 및 은행이자)으로

별첨과 같이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추가로 지원코자 합니다

첨부 : 1. '88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지원 계획 (추가) 1부

2. 공고 (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산업과장

제목 같 은 건

1.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 및 동집행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하니 신청서에 의거 일건 서류를 구비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88.10. 12 까지 추천토록 할것이며

2. 공개 행정 구현 지침에 따라 별첨 공고(안)은 구청 게시판에 게시 및 귀관내 해당업체에 신청토록 홍보하고

3. 재정 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시 각종 기재 사항 및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융자 선정된 업체가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천 기일내에 도착되지 않은구는 해당업체가 없는것으로 간주 할것이니 이점 유의할것

첨부 1. 공고 (안) 1부

150

2. 중소기업 육성 재정 자금 지원 계획 1부. 끝.

수신처 : 서구 1022 /

(제 3 안)	
수신 공보관	발신 산업경제국장
제목 시보경제 의뢰 및 보도자료 제출	
1. 관련근거 : 행정 150-680 (84.12.28) 호	
2. 상기 대호로 시달된 공개행정 구현 강화 지침에 따라 우리시 '88년도 중소기업	
육성 재정 자금 지원대상 업체를 신청 받고자 별첨과 같이 공고하고 시보에 게재코자 공고	
(안)을 송부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 (안) 제 호 2부. 끝.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지원(용자) 공고문 송부	
1.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업체를 별첨 공고와 같이 선정코자 하오니 귀조합 산하 중소기업체에서 업체 관할구청에	
신청하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 서울시 가구공업협동조합외 9개소	
151	

'88년도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지원 (용자) 계획 공고

=====

권	1988. 9. 27	제 273호
관	서울특별시	상공부
장	서울특별시	상공부
부	서울특별시	상공부
서	서울특별시	상공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670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 (용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88. 9. 27.

서울특별시

1. 지원 내용 및 용자 조건

- 가. 대상 : 서울시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자
- (1) 공업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영위자
 - (2) 준공업 지역안에 소재하고 공장용도의 건물에 입주한 업체
 - (3) 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공해 배출 시설 허가를 득한자
(허가 대상 업체에 한함)
- 단, 영세민에게 부업제공등 영세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업체는 (2),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용자총액 : 639,000 천원

다. 지원액비율 : 2% (신청 금액에 따라 증감)

라. 용자조건

- (1) 자금의 용도 : 운전자금
- (2) 업체당 지원한도액 : 30,000,000원 이내
- (3) 금 리 : 년 10%
- (4) 상환기간 : 3년 (1년 6월 거치 1년 6월 본환상환)

마. 신청 기간 및 장소

- (1) 신청 서류 배부 및 접수기간 : 2019.07~10.31 (15일간)
- (2) 배부 및 접수장소 : 구청 산업과
- (3) 구비서류
 - (가) 사업 계획서
 - (나) 공장 등록증 사본
 -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라)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 (마) 공해배출 시설 허가증 사본 (허가대상 업체에 한함)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상공과 (전화 731-6311~3) 또는
관할구청 산업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지원계획

시 울 특 별 시

154

10-6

'8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재정 자금 지원계획(추가분)

우리시 관내 중소 제조 업체에 운영 자금을 지원 함으로서 중소기업을 육성키
위함

1. 자금현황

가. 자금조성총액 : 1,570,207,399 원
 ○ 시비출연금 : 720,000,000 원
 ○ 회전이자액 : 850,207,399 원

나. 운용현황

 ○ 은행대하액 : 1,570,207,399 원
 ○ 업체대출액 : 930,990,000 원
 ○ 대출회수액(은행보유): 639,217,399 원

2. 지원내용 및 응자조건

가. 신청기간 : '88.9.27 - 10.11 (15일간)

나. 지원예정액 : 639,000,000 원

 ○ 지원업체수 : 21 업체 (신청금액에 따라 증감)

다. 응자조건

 ○ 자금의 용도 : 운전자금
 ○ 업체당 지원 한도액 : 30,000,000 원이내
 ○ 금 리 : 년 10%
 ○ 상환기간 : 3년 (1년 6월 거치 1년 6월 분할상환)

3. 지원대상 업체

가. 본 자금의 응자지원 대상은 본자금 운용요강 제3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함
다만, 영세민에게 부업을 제공하는등 영세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업체로서 관할구청장이 추천한 업체는 2) ,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1) 서울특별시내 소재하며 공업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 영위자
- 2) 준공업 지역안에 소재하고 공장용도의 건물에 입주한 업체
- 3) 환경 보존법 규정에 의한 공해배출 시설 허가를 득한자
(허가 대상업체에 한함)

4. 지원업체 선정 기준

가. 지원신청업체가 지원계획 업체보다 많을시에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응자대상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자대상자 및 응자 금액을 결정하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선정함

- 1) 준공업 지역안의 공장용도 건물에서 제조업 영위자
- 2) 비공업 지역안에 있는 업체는 도시형업종의 제조업 영위자
- 3) 공예품, 올림픽상품 전문 생산업체
- 4) '87 공장새마을 운동 실적 평가 결과 우수업체
- 5) 총무계획상 상공동원등 중점관리 업체로 지정된 업체
- 6) 영세민에게 부업제공등 소득 증대와 고용효과가 큰 업종 경영자

5. 지원절차

가. 계획공고 : '88. 9. 27

- . 공고방법 : 구청게시판 및 시보 게재 공고
- . 공고안 : 별첨

나. 응자신청 : 해당업체

- . 신청기간 : '88.9.27-10.11 (15일간)
- . 접수처 : 업체소재 관할구청 산업과

○. 구비서류 (소정양식 구청에 비치)

- . 신청서 1부
- . 사업계획서 1부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공해 배출시설 허가증 사본 1부
- . (허가 대상 업체에 한함)
- . 영세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실을 증빙 할수 있는 서류
(해당 업체에 한함)
- . 기타 공예품 전문생산업체,올림픽상품 생산 지정 업체는
지정서 사본 1부

다. 응자 대상 업체 추천 (구청장 →시장) : '88.10.12

- . 조사 복명서 및 신청서 첨부

라.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재정자금 응자심의 위원회 심의 : '88.10.18

- . 응자대상 및 응자액 결정

마. 중소기업은행 및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 '88.10.25

6. 기 타

- . 구청장은 공고문개시는 물론 관내 대상업체에 널리 홍보하여 공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할 것이며

- . 대상업체에 추천시 각종 기재 사항 검토 및 현장 조사 복명에 철저를 기하여 착오로 인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것.